

의안번호	2201657
의 퇴 인	송기헌의원
회 답 일	2024. 7. 30.
추 계 번호	24B19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제1항) 6의2. <u>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u> 6의3. <u>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u>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기금의 용도)	<주민지원사업> (제6호의2)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악취저감장비시설 재정지원> (제6호의3)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¹⁾ 및 「축산법」 제47조제1항제6호²⁾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장비·시설³⁾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을 매년 약 3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행중 ※ [참고자료 1] 축산악취개선사업 현황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양돈 1,000두 규모 축사의 경우, 분무시설 약 20백만원, 바이오 커튼 설치에 약 50~60백만원 소요

2. 상세 사유

기금의 용도—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 배출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에 추가적으로 보조 또는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행법 제44조⁴⁾는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항목으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출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배출시설⁵⁾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지원단가, 물량, 지원율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들 변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은 [참고자료 2] 「수도법」, 「폐기물시설축진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현황 참고

4) 법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 ③ (생략)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에서 ‘배출시설’이라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이를 「가축분뇨법」의 정의를 빌려 ‘허가 대상 모든 축사’로 해석하더라도,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약 800개)과 같은 한정된 여건과 달리 약 10만 호에 달하는 전국 축산농가별로 상이한 주변 주민 여건에 대한 자료는 부재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축산악취개선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요 및 현황

- (개요) 지자체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처리 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지자체 공모사업)
- (추진현황) '24년 33개 축산악취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농가에 축산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중

<최근 3년간 축산악취 개선사업 주요 실적: 2021~2023년>

지원년도	2021	2022	2023
대상시군 (개소)	30	33	30
대상시군 (지역)	경기(동두천, 안성, 용인, 평택, 포천, 화성), 강원(고성, 원주), 충북(청주), 충남(당진, 홍성), 전북(고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전남(나주, 담양, 영암, 완도, 함평), 경북(경주, 상주, 안동, 의성), 경남(김해, 밀양), 제주(제주, 서귀포)	경기(화성, 안성, 연천), 강원(철원), 충북(보은, 옥천), 충남(예산, 논산, 청양, 홍성), 전북(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전남(고흥, 장흥, 완도, 보성, 무안, 함평, 곡성), 경남(김해, 창원)	경기(안성, 포천, 화성), 강원(철원, 화천), 충북(진천, 청주), 충남(공주, 예산, 홍성), 전북(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정읍), 전남(영광, 영암, 해남, 화순), 경북(경주, 고령, 상주, 성주, 영천, 예천), 경남(김해, 전주, 합천), 제주(제주, 서귀포)

* 지원비율: 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최근 4년간 축산악취개선 관련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농림축산 식품부	•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3735-329) •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30) - 축산악취개선	축산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48,228	54,298	47,238	47,185	39,335	39,335	26,460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1131-301)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	48,474	42,618	56,723	56,723	45,946	45,528	59,4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수도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수도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수도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법적 근거	회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	환경개선특별회 계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등	1,088	1,070	1,286	1,286	1,158	1,158	1,278
		복지증진사업	상수도시설의 지원, 수세식 화장실, 진 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도서관·유치 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등	812	812	690	690	812	812	691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 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등	100	100	24	24	30	30	31
		그 밖의 사업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 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 우등의 지원사업	0	0	0	0	0	0	0
		소계		2,000	1,982	2,000	2,000	2,000	2,000	2,000

법적 근거	회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한강수계법」 제 11조(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 지원비	간접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61,772	61,772	65,781	65,781	66,552	66,552	64,114
			직접지원 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 사업							
		특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15,443	15,443	17,161	17,161	17,491	17,491	16,446
		소계			77,215	77,215	82,942	82,942	84,043	84,043	80,560
「낙동강수계법」 제 23조(주민지원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 지원비	간접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19,709	19,709	16,379	16,377	16,100	16,090	15,706
			직접지원 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 사업							
		특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4,922	4,922	7,020	6,955	6,900	6,900	5,235
		소계			24,631	24,631	23,399	23,332	23,000	22,990	20,941
「금강수계법」 제 21조(주민지원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	일반 지원비	간접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13,221	13,221	12,235	12,235	12,233	12,233	13,073
			직접지원 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 사업							
		특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4,120	4,120	3,956	3,956	3,956	3,956	5,612
		소계			20,820	20,820	19,779	19,779	19,779	19,779	22,446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일반 지원비	간접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11,257	11,257	11,598	11,598	11,946	11,946	13,273
			직접지원 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가구별 생활지원 사업							
		특별 지원비	특별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814	2,814	3,880	3,880	4,623	4,623	4,953
		소계			14,071	14,071	15,478	15,478	16,569	16,569	18,22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⁶⁾

-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설치기관의 출연금, ②해당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 ③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④기금 운용 수익금, ⑤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타 지자체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설치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 현황: 2021~2022년>
(단위: 백만원)

주민지원사업		2021년	2022년
기금 조성액		91,805	89,166
집행액	계	59,550	60,166
	소득증대사업	1,184	1,582
	복리증진사업	41,367	41,108
	육영사업	1,443	1,168
	그 밖의 사업	15,556	16,30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6)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